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6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김형동 · 백종현
엄태영 · 우재준 · 김재섭
서지영 · 최보운 · 유상범
김태규 · 김대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도시재생의 수단을 새로운 기능의 도입 ·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 등 공간을 채우는 방식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, 노후 · 불량건축물이나 방치된 시설을 철거하여 공간을 비우고 공원 · 녹지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.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거나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는 비우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 · 재편을 명시하고, 빈집, 노후 · 불량건축물 등을 철거 · 정비하여 그 부지를 공원 · 녹지 등으로

조성·관리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며, 이에 관한 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, 철거 및 부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항제1호 등).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지역역량의 강화, 새로운 기능의 도입·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”을 “지역역량의 강화, 새로운 기능의 도입·창출, 지역자원의 활용 및 도시환경의 정비·재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가 목14)를 15)로 하며, 같은 목에 1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) 빈집, 노후·불량건축물 등을 철거·정비하여 그 부지를 공원·녹지·광장 등으로 조성·관리하는 사업

제19조제3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3. 빈집, 노후·불량건축물 등의 철거·정비 및 그 부지의 활용
· 관리에 관한 계획

제2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빈집, 노후·불량건축물 등의 철거 및 철거 후 부지의 정비에
필요한 비용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.
1. “도시재생”이란 인구의 감소, 산업구조의 변화,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,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<u>지역역량의 강화, 새로운 기능의 도입·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</u> 을 통하여 경제적·사회적·물리적·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지역역량의 강화, 새로운 기능의 도입·창출, 지역자원의 활용 및 도시환경의 정비·재편</u> ----- -----.
2. ~ 6의3. (생략)	2. ~ 6의3. (현행과 같음)
7. “도시재생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	7. ----- -----.
가.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	가. ----- ----- ----- -----
1) ~ 13) (생략)	1) ~ 13) (현행과 같음)
<신설>	14) 빈집, 노후·불량건축물 등을 철거·정비하여 그 부지를 공원·녹지·광장 등으로 조성·관리

14) (생 략)

나. · 다. (생 략)

8. ~ 12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19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) ① · ② (생 략)

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3의2. (생 략)

<신 설>

4. ~ 8. (생 략)

④ ~ ⑦ (생 략)

제27조(보조 또는 융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

<신 설>

하는 사업

15) (현행 14)와 같음)

나. · 다. (현행과 같음)

8. ~ 1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.

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

3의3. 빈집, 노후 · 불량건축물 등의 철거 · 정비 및 그 부지의 활용 · 관리에 관한 계획

4. ~ 8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보조 또는 융자) ①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3의2. 빈집, 노후 · 불량건축물 등의 철거 및 철거 후 부지의

4. ~ 11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<u>정비에 필요한 비용</u> 4. ~ 11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